



학생 중심, 현장 중심 교육

학교운영위원회 심의안 후 시흥가온초등학교 확정안

## 2021 시흥가온초 학교생활인권규정(확정안)



### 시 흥 가 온 초 등 학 교 SIHEUNG GAON ELEMENTARY SCHOOL

우(14996) 경기도 시흥시 장현능곡로 33  
교무실 ☎ 031)364-1700~2 행정실 ☎ 031)364-1770~3

<http://www.gaon.es.kr>

담당선생님 : 생활인권부장 윤다미

## 목차 : 2021 시흥가온초 학교생활인권규정

# CONTENTS

<b>&lt;제1장&gt; 총칙</b>	1
제1조(명칭)	1
제2조(목적)	1
제3조(적용근거)	1
제4조(적용원칙)	1
제5조(학교구성원의 책무)	1
<b>&lt;제2장&gt; 학교생활</b>	2
제1조(시설이용과 환경)	2
제2조(차별받지 않을 권리)	2
제3조(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)	2
제4조(위협으로부터 안전)	2
제5조(학습에 관한 권리)	2
제6조(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)	2
제7조(휴식을 취할 권리)	3
제8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	3
제9조(사생활의 자유)	3
제10조(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)	3
제11조(정보에 관한 권리)	3
제12조(양심 종교의 자유)	4
제13조(의사 표현의 자유)	4
제14조(학교 복지에 관한 권리)	4
제15조(교육환경에 대한 권리)	4
제16조(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)	5
제17조(급식에 대한 권리)	5
제18조(건강에 관한 권리)	5
제19조(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)	5
제20조(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)	5
제21조(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)	Pp.5~6
<b>&lt;제3장&gt; 학생자치활동</b>	6
제1조(자치활동의 권리)	6
제2조(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)	6
제3조(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)	6
<b>&lt;제4장&gt; 학생생활교육</b>	6
<i>(시흥가온초등학교 별도 학생생활교육 규정에 의거 시행)</i>	
<b>&lt;제5장&gt; 규정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</b>	7
제1조(목적)	7
제2조(적용범위)	7
제3조(용어의 정의)	7
제4조(규정제·개정심의위원회 구성)	7
제5조(위원회 운영)	7
제6조(개정안 발의)	8
제7조(검토 및 의견수렴)	8
제8조(심의 및 결정)	8
제9조(공포 및 정보 공시)	8
제10조(연수 및 교육)	8
제11조(기타)	8
<b>부칙(공포·시행)</b>	8

## 2021학년도 시흥가온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 학교운영위원회 후 확정안

제정 : 2020.09.01.(신설학교 개교)  
개정 확정·공포·시행 : 2021.04.15.

### 2021 시흥가온초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안 확정·공포·시행 위원구성 및 개정절차

- 순서① :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(8명) 2021.03.11.(학생대표3, 교직원2, 학부모2, 전문가1)
- 순서② : 학교교육공동체 의견수렴을 위한 개정안 발의 : 2021.03.11.~ 2021.03.29
- 순서③ :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회 개최 : 2021.04.13.
- 순서④ :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안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상정 심의 : 2021.04.14
- 순서⑤ :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안 확정·공포·시행 : 2021.04.15.(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)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명칭)** 이 규정은 ‘시흥가온초등학교 생활인권규정’이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 규정은 시흥가온초등학교 학생의 인권과 학교 구성원 간 상호존중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돋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적용근거)**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~6호, 제10호(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)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~9호(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) 규정한다.

**제4조(적용원칙)** ①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, 학생의 인권은 본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.  
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그 제·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.

**제5조(학교구성원의 책무)** ① 학교의 장(이하 ‘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, 법인’ 등 포함)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·보호·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.  
②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,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제2장 학교생활

**제1조(시설이용과 환경)**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,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 한다.

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,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조(차별받지 않을 권리)** ① 학생은 성별, 종교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, 출신국가, 출신민족, 언어, 장애, 용모 등 신체조건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, 인종, 피부색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성적 지향, 병력, 징계,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,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.

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3조(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)** ① 학생은 따돌림, 집단 괴롭힘,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.

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.

③ 교장은 따돌림, 집단 괴롭힘,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위험으로부터 안전)** ① 교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장 등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,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학습에 관한 권리)**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.

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장 등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교장 등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, 다문화가정 학생, 예체능 학생,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)**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,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교장 등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,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교장 등은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7조(휴식을 취할 권리)**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·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.  
② 교장 등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 
③ 교장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.

- 제8조(개성을 실현할 권리)** ① 학생은 복장,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.  
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.  
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①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.

- 제9조(사생활의 자유)** ① 학생은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·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.  
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교직원이 교육목적으로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,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 
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.  
④ 교장 등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에 따라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.  
⑤ 교장 등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.

- 제11조(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)** ① 학생은 가족, 교우관계, 성적, 징계기록, 교육비 납부여부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.  
② 교장 등은 학생에게 교외에서의 이름표 착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.  
③ 교장 등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·처리·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.  
④ 교장 등은 학생에 관한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 
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12조(정보에 관한 권리)**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.  
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

이 경우 학교의 장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,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,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.

④ 학교의 장은 예·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양심·종교의 자유)** ① 학생은 세계관·인생관 또는 가치적·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.

② 교장 등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,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교장 등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4조(의사 표현의 자유)**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 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,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 대한 보장하고, 필요한 시설 및 행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④ 학교의 장은 학교 홈페이지 및 교내 장소에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·제공하고,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·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 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철거 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.

**제15조(학교복지에 관한 권리)** ① 학생은 학습부진, 폭력피해, 가정위기,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발견, 진로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, 장애 학생, 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·사회·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.

④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,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용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교육환경에 대한 권리)**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, 청결한 환경의 유지,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, 적절한 냉난방 관리,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)**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, 공연,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용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급식에 대한 권리)**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

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,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,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친환경, 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건강에 관한 권리)**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,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.

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, 교장 등은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)**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,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, 소명의 기회 보장, 대리인 선임권 보장,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,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,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8.6.>

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,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지도 방법 및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23조(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)**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학생인권 옹호관에게 상담 및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.

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,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

④ 학생인권옹호관은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, 교육감 및 교장 등은 제1항의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, 그 처리결과를 청구 및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21조(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)** ① 교장 등은 빈곤, 장애, 한부모가정, 다문화가정, 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장 등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

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교장 등은 장애 학생에게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,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④ 교장 등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⑤ 교장 등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교육활동에서 언어·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## **제3장 학생자치 활동**

**제1조(자치활동의 권리)** ① 학생은 동아리, 학생회 및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, 소집, 운영,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(권리를 가진다).

② 교장 등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**제2조(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)**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·개정하고,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·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,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.

**제3조(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)**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③ 교장 등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⑤ 교장 등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

### **제4장 학생생활교육**

시흥가온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규정은 별도 규정 의거 시행(2021.04.15.)한다.

## 제5장 규정제·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『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』(이하 '영'이라 한다)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'사홍가온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'에 필요한 세부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 범위)** '시홍가온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'을 제·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'학교생활인권규정'이라 함은 시홍가온초등학교의 학교 규칙 중에서 '학생포상, 징계,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,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,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, 학교 내 교육·연구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,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, 학칙개정 절차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'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.

**제4조(위원회 구성)** ① 시홍가온초등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·개정하기 위하여 「규정 개정심의위원회」(이하 '위원회')를 둔다.  
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~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, 학생·보호자·교원·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, 학생의 수가 반드시 1/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,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한다.

### 시홍가온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 8인으로 구성·운영

- ① **학생 대표(3인)** → 전교 학생들이 직접 선출한 전교학생자치회장 1인, 5학년 부회장 1인, 6학년 부회장
- ② **학부모 대표(2인)** →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 학부모 회장 1인, 부회장 1인을 학교장 위촉
- ③ **교직원 대표(2인)** →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선출한 대표 2인
- ④ **전문가(1인)** → 장곡동사무사 사회복지사 1인을 학교장 위촉

-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,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보호자 대표는 학부모대표 회의에서 선출한다.
-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·보호자·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.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, 단체 활동가, 대학 교수, 사회복지사, 청소년지도사, 상담사, 퇴직 교원 등 외부위원으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.
-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·학부모·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, 일정,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.

**제5조(위원회 운영)**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,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,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, 문헌조사를 실시하며, 학교관계자, 학부모 대표,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.

**제6조(개정안 발의)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.

1.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
2. 재직 교원의 과반수
3. 학부모 대표(학부모회 의결서 첨부)
4. 학생회 대표(학생회의 의결서 첨부)
5. 학교장

**제7조(검토 및 의견수렴)**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,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의(학급·학년회의, 학생대의원회 회의, 학부모회 회의, 교직원 회의 등), 가정통신문, 스티커 붙이기,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.

**제8조(심의 및 결정)**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.

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.

**제9조(공포 및 정보 공시)** 학교홈페이지 탑재 등 정보 공시한다.

**제10조(연수 및 교육)**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,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.

**제11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‘시흥가온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개정심의위원회’의 협의로 결정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(2021.04.15.)로부터 시행한다.